

의안번호	제 66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발 의 자	정상교 의원
발의연월일	2021년 3월 3일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정상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67
----------	-----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3일

발 의 자 : 정상교 의원

찬 성 자 : 박성원,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의원

1. 제안 이유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19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대상(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 및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마.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감염병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안 제7조)

바. 감염병대책본부 설치·운영(안 제8조)

사.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안 제9조)

- 아. 등교중지 등(안 제10조)
- 자. 학습 및 돌봄 지원(안 제11조)
- 차.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 카. 예산 지원(안 제13조)
- 타. 시행규칙(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22호
(2021. 2. 22. ~ 2021. 2. 26.)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교육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3.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6. “능동감시”란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감염병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교
육기관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기관
내 감염병 확산방지 및 대응을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
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
방과 대응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 사업
3.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방안
4.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방역 및 방역물품 확보·지원 방안

6. 소요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7.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감염병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자료와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및 경계(Orange) 단계 : 부교육감
2. 심각(Red) 단계 : 교육감

④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주의 단계 : 수동감시

2. 경계·심각 단계 : 능동감시

④ 교육감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일시적 폐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도 적극 협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 또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설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여 방역소독 등으로 학교가 일시폐쇄될 경우 그 사실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등교중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학습 및 돌봄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학교가 휴업·휴교·휴원을 하거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의 학습 및 돌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 12. (생략)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 15. (생략)
-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 20.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

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시행일 : 2021. 6. 16.]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 2021. 6. 16.]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0. 8. 11.>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6.(생략)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①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 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

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2020. 8. 1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 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 7.]

□ 학교보건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8조(등교 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20. 10. 20.>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검역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신설 2020. 10. 20.>

제14조(질병의 예방) 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호가목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2.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20.]

제14조의3(감염병 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11.>

1.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 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

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내용 중 방역 및 방역물품,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산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 방역 및 방역물품,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에 따른 비용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산지원 비용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